

[일련번호 : 94]

# 양 천 구

## 주 의 요 구

**제 목** 행사실비지원금 지출 부적정

**관 련 기 관** 서울특별시 양천구 ◻◻과

**내 용**

### 1. 업무개요

◻◻과는 「지방회계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을 집행하고 있다.

### 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회계법」 제5조에 따르면 ‘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’고 규정하고 있어, 이에 따라 모든 회계서류는 입증책임이 있어 구매한 물품에 대한 지급 내역이 명확하여야 할 것이다.

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각 과장은 같은 훈령 제3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, 검수조사 등을 작성하고,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류를 일상경비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

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」에 따르면 행사실비지원금은

교육, 세미나, 공청회,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, 산업시찰·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등을 말하며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별표2 [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]에 따르면 행사실비지원금 중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입금하고, 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◆◆과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행사실비지원금을 지출하면서 간식비, 간담회비 지급 등에 대한 지급조서, 참석자 명단 등을 누락하여 실제로 행사에 참석한 적정 집행대상자에 매식비 단가에 맞는 적정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한 사실이 있다.

### 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◆◆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### 5. 조치할 사항

#### ◆◆과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,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 
(주의)